

첨부 : 위탁협약서(안)

『청춘극장』 위탁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조이슈즈(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춘극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과 ‘을’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청춘극장』운영 협약 체결
2. 사업목적 : 어르신 문화 복지 및 일자리 제공
3. 사업기간 : 2013. 3. 1 ~ 2015. 2. 28 (24개월)
※ 1차 협약 기간 : 2013. 3. 1 ~ 2013. 12. 31 (10개월)
2차 협약 기간 : 2014. 1. 1 ~ 2015. 2. 28 (14개월) 로 한다.
4. 사업장소 : 문화일보홀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문화일보 사옥 M1층 문화일보홀)
5.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
6. 사업내용 : ‘극장’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제3조 (협약기간)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업무위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완료일까지 한다.

제4조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사업’에 관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극장’시설 관리 : 운영시간 09:00 ~ 18:00(일요일 제외)
 - ‘극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 ‘갑’이 설치·제공한 시설 및 물품 관리(수탁재산대장 비치)
 - 관리사무실 운영(영사실, 매표소 등 포함), 청소, 매표관리
 -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등
2. 극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실버카페 및 이벤트공간 운영 등
3. 사업비 집행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갑’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계획)

- ① '을'은 위탁협약 후 7일 이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서에는 운영목표, 프로그램계획, 평가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입장료 징수계획, 인력운영계획, 판권확보계획, 안전관리계획, 사회적 기업연계 운영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갑'은 제1항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을'이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8조에서 정한 정산금액의 10% 이내에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극장의 시설 및 안전관리)

- ① '을'은 '극장'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을'은 '극장' 내 시설 및 기자재 등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으로 인해 '극장' 내 시설물을 훼손 할 경우 복구의 책임을 진다.
- ③ '을'은 시설 및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갑'의 손해액을 '갑'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이 계약체결 이후 사업비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갑'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수탁재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⑤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시민고객 등 관람객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용객 규모에 맞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 ① '을'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갑'의 지침·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출연자, 관람객 등 관계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화상영 권리를 획득하여 저작권 및 판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며,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영화상영권 확보와 관련해 '을'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경고, 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을'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월별 운영결과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대학 또는 서울시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을'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내용, 처리부서(단체),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관련요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급)

- ① '갑'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계약체결과 사업계획서 승인 후 '을'의 청구에 따라 매월 운영비를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 ② '을'이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내역서와 과업수행 경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청구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서에는 모든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인건비는 계좌이체내역, 영화상영권은 당사자 간 계약서, 입금내역(세금계산서)으로 제 비용 사용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및 입금증빙서류로 증명되는 한도에서만 지급하며, 사업비

초과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④ 사업비는 당초 제출한 사업세부내역의 항목 내에서 사용한다. 특히 영화 상영권 확보 비용, 영업배상보험, 회계사 평가비용은 정산 후 실제 비용이 계획보다 적게 나온 경우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①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목적의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갑'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① '을'은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법인의 검사를 필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때 '을'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지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입금 명세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갑'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갑'의 '사업'에 대하여 '을'이 그 사업목적에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달성목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 지급한 사업비잔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은 '갑'의 '사업'관련 손해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국회, 시의회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다)의 감사결과 또는, '갑'이 정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최종 지급예정 사업비에서 과다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최종사업비 지급완료 이후에는 '을'은 '갑'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료 징수)

-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입장료는 '갑'을 대신하여 '을'이 징수한다.
- ② '을'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입장료를 '갑'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울시에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티켓발권내역서(영수증), 수입금정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입장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정준수) '을'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을'은 이용객 안전사고 및 수탁재산의 피해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 있으며,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관리·감독한다.
- ② '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하거나, '갑'의 소속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을'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 ① '을'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전부를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사건·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이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① '갑' 또는 '을'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 1.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2. '갑'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갑'에게 공익상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 5. '을'의 귀책사유로 영화상영권(저작권) 관련 분쟁을 야기할 때

- ③ '갑'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을'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비밀사항, 기타 과년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등)

-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계약사항을 이행하거나 계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갑'이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3년 3월 25일

‘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박 원 순 (인)

‘을’ 주식회사 조이슈즈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8길 23)

대표이사 서현석 (인)